



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4. 21.(화)
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

-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심사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이금성

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45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6. 4. 10.
- 회 부 일 : 2026. 4. 10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,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2제1항 개정사항 반영(안 제7조)
 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개정
 - ※ 재산세 경감률 : 100분의 50 →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,
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제4항 위임 사항 신설(안 제8조의2)
 -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반영
 - ※ 지방세 감면 : 재산세 및 자동차세 100% 감면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2, 제92조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60조

시·군 표준조례(안) 통보 [충청남도 세정과-836(2026.01.16.)]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
○ 기타

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3031)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3028)
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8376)

- 입법예고(2026. 2. 20. ~ 2026. 3. 12.) : 제출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,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군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,

- 안 제7조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기존 ‘100분의 50’에서 ‘최초 5년간 100분의 50,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’로 개정하였음. 이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감면 혜택 기간을 세분화하여 연장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 또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‘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’ 조문을 신설하여,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100%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. 이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제4항의 위임 사항에 부합하는 개정으로,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 없

이도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.

- 마지막으로,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자구 수정과 함께 재난 피해 군민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어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, 다만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약 1억 5,0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더불어, 부족해진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원 발굴 등 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